

비 축 명 령 서

기관명				소재지		
대표자						
「국가자원안보 특별법」 제15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축할 것을 명합니다.						
핵심자원	규격 또는 구조	단위	수량	비축 장소	비축 기간	비고
년 월 일						
산업통상부장관 직인						